

인천지방법원 2021. 5. 18 선고 2018가단229556(본소), 2019가단241638(반소) 판결

[사해행위취소 ·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성민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권용모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7.[피고(반소원고)에 대하여] 2021. 5. 4.(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)

판 결 선 고 2021. 5. 18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,

가. 평택시 D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33, 34, 35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127㎡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40, 41, 42, 25, 26, 27, 28,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㉕부분 341㎡ 지상에 적치한 석재를 수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

나. 4,550,260원 및 2020. 4. 15.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4,780원의 비율로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에게 52,299,07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원고는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B’이라 한다)에 대한 본소는 취하하였다].

반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2016. 4.부터 2016. 11.까지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‘피고 C’라고 한다)에게 합계 52,299,070원 상당의 석재를 재단하여 주었으므로,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석재재단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5,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52,299,070원 상당의 석재를 재단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.

2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감정인 E, F의 각 감정 결과, 피고 C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B이 2016. 8. 4.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평택시 D 구거 2,020㎡

중 570㎡, G 구거 294㎡, H 구거 4,630㎡ 중 384㎡를 2016. 8. 4.부터 2026. 8. 3.까지 임차한 사실, 원고가 2017. 11. 1.부터 피고 B이 임차한 위 평택시 D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33, 34, 35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127㎡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40, 41, 42, 25, 26, 27, 28,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부분 341㎡ 지상에 원고 소유의 석재(이하 이 사건 '석재'라고 한다)를 적치하고 있는 사실, 위 ㉠, ㉡부분 합계 468㎡(이하 이 사건 '토지'라고 한다)의 2017. 11. 1.부터 2020. 4. 14.까지의 임료 합계는 4,550,260원이고, 2020. 4. 월 임료는 164,7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이 사건 석재를 수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이 사건 석재를 적치하기 시작한 2017. 11. 1.부터 2020. 4. 14.까지의 임료 합계 4,550,260원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4,780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석재를 이 사건 토지로 무단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석재를 적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피고 C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석재를 일시적으로 옮겨 두면 나중에 치우겠다고 하여, 피고 B이 이 사건 석재를 이 사건 토지에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.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승준



